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349
----------	------

2016. 11.30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8월 16일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6.11.30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)

### □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」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,
- 나.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,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」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‘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및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
- 나. 위탁개요
  - 위탁기간 : 3년(2017~2019)
 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  - 소요예산(안) : 연5,200백만원
- 다. 주요 위탁내용
  -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
    -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기획 및 운영
    -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행 및 지원

- 중간지원조직, 전문가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·소통
- 도시재생사업 홍보

○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

- 희망지 사업 및 희망돋움 사업 공모 및 실행 지원
- 희망지 등 유형별 주민 제안 검토 및 실행 지원
-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
-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상담·컨설팅

○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

- 주민공동체사업 실행 및 지원
- 도시재생 현장 분석, 지역자원조사 평가 및 활용
-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

○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 주민참여 실행

- 주민협의체 구성·운영 지원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참여방안 지원
- 지역재생협동조합, 지역개발센터 구성 및 운영
- 마을기업,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

라. 추진근거

-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6호, 2016.1.12.)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, 제10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마. 필요성

- 행정이 주도하는 현 도시재생사업의 경직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나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변화 필요
-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,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할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 필요
-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
- 3+5 근린재생사업지의 도시재생사업 조기성과 달성 필요
- 쇠퇴노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증가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전, 희망지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필요에 따른 전문지원조직과 전문인력 필요
- ※ 밑줄 표기사항은 의안번호 1212호 동의안과 다른 내용임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**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)**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4.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)**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0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·위탁)**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사무의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4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동의안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, 특별법)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, 조례)에 따라 설치되는 ‘시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, 시 센터)’의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, 서울특별시장이 2016년 8월 12일 제출하여 2016년 8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.

- 시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68회 정례회에(의안번호 1212, '16.5.30.) 상정된 바 있으나('16.6.17.), 우리위원회에서는 “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이해도가 아직 낮고,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·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업무가 중복되며, 일부 민간법인·단체에 업무 편중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수탁기관의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”는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.
-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(의안번호 1349)은 지난 정례회에 제출한 동의안(의안번호 1212)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<sup>1)</sup>
  - 위탁기간은 3년이고(2017~2019), 도시재생사업에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며, 조직규모는 31명<sup>2)</sup>, 위탁비용은 연간 52억원을 산정함.
  - 연간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13억 8천8백만원, 운영비 2억 6천만원, 사업비 35억 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, 이 중 사업비는 30여 억원이 근린재생형(일반형)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운영되는 희망지·희망돋움 사업 관련 비용이고<sup>3)</sup> 나머지는 홍보, 교육, 주민역량강화 등에 편성되어 있음(붙임).
- 지난 회기에 제출된 동의안이 폐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<sup>4)</sup>, 주효한 변경 없이 시 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배경은, 가장 중요한 위탁업무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희망지·희망돋움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간 주도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나, 의지를 앞세워 지방자치법 규정<sup>5)</sup>을 기술적으로 회피하고 의회 의안처리절차를 경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현재, 도시재생의 초기 단계로 민간부문의 도시재생 지원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간 52억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, 지역사회 현장 지원 중심의 업무 특성을 감안 시, 창의적 사고와 유연한 방법으로 도시재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고 사료됨.

1) 동의안 제목과 위탁내용에서 일부 변경사항 있음(3~4페이지에 밑줄로 표시)

\* 제268회 정례회에 제출되었던 안건(의안번호 1212)이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안건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(지방자치법 제69조), 동의안의 제목·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제270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함.

2) 추진반의 임기제 공무원 7명 고용승계 포함

3)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지원코자 하며, 근린재생형(일반형)은 희망지로 지칭하고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(중심시가지형)은 후보지로 지칭하고 있는데, 시 센터에서는 근린재생형(일반형) 희망지 운영 및 희망돋움사업(희망지에 미선정된 지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희망지사업의 사전단계라고 할 수 있음)을 중심으로 업무가 계획되어 있음

4) 기 제출된 동의안(안건번호 1212)은 제271회 정례회 개최중인 11월 29 폐기에정임

5) 지방자치법 제69조(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)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. 다만,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.

<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지원 경험이 있는 민간법인 현황 (자료: 주거재생과)>

법인명	설립일/자산	목적사업	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참여현황
(사)한국도시연구소	'94.10.1/	토지·주택·산업정책 관련 연구, 학습 및 교육활동 등	저소득층 주거지 생활사 연구 용역
(사)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	'04.5.20/	도시공동체 활동, 도시만들기사업 등	한평 공원 만들기,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동체 분야 참여
(사)나눔과미래	'06.7.5/50백만원	주거복지사업 등	서울성곽마을 공동체 활성화 용역, 성북구 석관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
(사)마을과 사람	'13.8.30/5백만원	마을공동체·도시재생지원사업 등	은평구 불광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
함께살이 성북사회적협동조합	'14.10.16/10백만원	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협력사업, 지역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 등	장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동체분야 참여, 도시재생 연계 사회적 특구 사업 참여
(사)서울산책	'15.4.1/43백만원	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관련사업, 서울의 거리녹화, 보행환경 개선 등	서울역 재생사업 고가 주변지역 조사 용역
(재)한국산업관계연구원	'87.12/	행정·경제·산업·조직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	동묘역 일대 도시관리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

- 다만,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경제기반형·근린재생형(중심시가지형)·근린재생형(일반형) 등 3가지 유형으로 지정되는데 시 센터의 업무는 근린재생형(일반형)에 편중되어 있으므로, 경제기반형·근린재생형(중심시가지형)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반면, 교육·홍보 등 서울시 유사 민간위탁 센터와 업무공조·업무분담이 가능한 사안들은 그 비중을 축소하여, 시 차원에서 유사 센터 간의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고 집행의 전체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이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비·시행될 필요가 있겠고,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추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과 민간전문가(위촉)는 수탁기관으로의 사실상 고용승계가 예상되는 가운데<sup>6)</sup>, 도시재생 지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수탁기관의 인력운영의 재량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능력 있는 많은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동의

8. 소수의견의 요지(우미경·이숙자·남창진·이석주 의원)

- 부결되었던 안건(의안번호 1212)이 내용상 주요 변경 없이 다시 제출된 건으로 부동의함
-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시스템이 필요하고, 민간위탁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

6) 임기제 공무원 7명은 공식적으로 고용승계에 포함되어 있고,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선정된 수탁기관이 인력채용 시 업무경험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여 채용될 가능성이 높음

#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」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,
- 나.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,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」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‘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및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3년(2017~2019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- 소요예산(안) : 연5,200백만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
  -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기획 및 운영
  -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행 및 지원
  - 중간지원조직, 전문가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·소통
  - 도시재생사업 홍보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
  - 희망지 사업 및 희망돋움 사업 공모 및 실행 지원
  - 희망지 등 유형별 주민 제안 검토 및 실행 지원
  -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
  -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상담·컨설팅
-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
  - 주민공동체사업 실행 및 지원
  - 도시재생 현장 분석, 지역자원조사 평가 및 활용
  -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

○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 주민참여 실행

- 주민협의체 구성·운영 지원
-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참여방안 지원
- 지역재생협동조합, 지역개발센터 구성 및 운영
- 마을기업,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

라. 추진근거

-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6호, 2016.1.12.)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, 제10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마. 필요성

- 행정이 주도하는 현 도시재생사업의 경직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나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변화 필요
-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,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할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 필요
-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
- 3+5근린재생사업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조기성과 달성 필요
- 쇠퇴노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증가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전, 희망지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필요에 따른 전문지원조직과 전문인력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**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)**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4.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)**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0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·위탁)**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총괄팀 이주영(☎2133-1586)